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자치행정과)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266호 |
| 제 출 자 | 이용진 의원 외 6명(2024. 3. 4.) |
| 의 안 명 |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
| 검 토 | 전문위원 정진만 |

1. 제안이유

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2018년 3월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을 포함한 ‘예산과정’으로 확대하고자 함.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함(안 제1조, 안 제3조 ~ 제5조, 안 제7조 ~ 제9조, 안 제12조, 안 제14조)
- 나. ‘예산과정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)
- 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함(안 제1조,

안 제15조 ~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자치행정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3. 7. ~ 2024. 3. 12.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을 포함한 ‘예산과정’으로 확대하고자하는 것으로,
- 주민참여예산제도 2011년 3월 의무화 이후,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9조¹⁾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‘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’로 규정되었으나, 2018년 3월 법 제39조²⁾, 2020

1) 개정 전

-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5. 13.>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3.,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11. 8. 4.]

2) 개정 후

-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18. 3. 27., 2021. 1. 12.>
-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예산기구(이하 “주민참여예산기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7.>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 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

년 3월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³⁾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‘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’ 로 확대하였음.

- 또한 2023년 2월 행정안전부 ‘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’에는 「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·방법 예시」에서 ‘사업제안→사업선정→예산편성→예산집행→예산결산’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‘예산의 편성 과정’에

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8. 3. 27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3., 2017. 7. 26., 2018. 3. 27.>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8. 3. 27.>

3) 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이 조에서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3. 3.>
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

2. 설문조사

3. 사업공모
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.>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.>

1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

2.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

3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
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3.>

국한되지 않으며, ‘예산의 편성, 집행, 결산’의 범위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
○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(목적) : “예산편성과정”을 “예산편성 등 예산과정”으로 개정
- 안 제2조(용어의 정의) : “ “예산과정”이란 예산의 편성·집행·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.”를 신설
- 안 제3조(법령준수의무) : “예산편성 시”를 “예산과정과 관련된”으로 개정
- 안 제4조 : “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”를 “예산과정에”로 변경
- 안 제5조, 7조, 8조, 9조, 12조, 14조 :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개정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‘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’로 확대하는 것으로, 그동안 성북구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